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국장 강현숙)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 급식지원방법 현행화 (안 제3조)
- 관련 법령 등에 맞는 정확한 용어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 6. 22.)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급식지원 방법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아동급식협력업체”에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 6. 22.)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재 운영 중인 아동급식지원 방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0 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등에 맞는 정확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변경(안 제1조, 제2조)

1)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나. 급식지원방법 현행화(안 제3조)

1) 아동급식협력업체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다. 관련 법령 등 조항에 맞는 용어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2. 10. 27. ~ 11. 6. / 1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아동급식협력업체”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제5조제1항 별표 3”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남부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p> <p>2. ~ 8. (생략)</p> <p>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p> <p>1. (생략)</p> <p>2. <u>아동급식협력업체</u>(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통</p>	<p>제1조(목적) ----- ----- <u>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u>----- ----- -----.</p> <p>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 ----- <u>제35조제5항</u> ----- ----- <u>제36조제2항</u>-----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 2. ~ 8. (현행과 같음)</p> <p>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아동급식카드 가맹점</u>----- -----</p>

한 급식지원

3. ~ 5. (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략)

4. 남부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5. ~ 8.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5조제1항 별표 3-----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5. ~ 8. (현행과 같음)